

추가약정서

(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_____ (인)
주 소 : _____

채무자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1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,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.

제2조 (기 보유 주택) 채무자가 속한 세대^{주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1) “세대”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 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

종류	소유자	주소

② 보유 중인 주택 등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3조 (주택 등의 추가 구입 금지의무 등)

-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부턴 전액 상환 전까지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 등을 구입^{주2)}하지 않습니다.

주2) 매매, 증여,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.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, 이하 같음

- ② 채무자는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전액 상환전까지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

2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보유^{주3)}하고 있는 경우

주3)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

제5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4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5)}이 제한됩니다.

주4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5)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<별표5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전액 상환전에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

추가약정서

(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)
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_____ (인)
주 소 : _____

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귀하

채무자 본인은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약정한 20
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(목적) 이 약정서는 전세자금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
약정입니다.

제 2조(용어)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주택의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‘규제대상 아파트’란 ‘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’를 말합니다.

제 3조(기보유 주택) 채무자 및 그 배우자(결혼예정자^{주1)}를 포함, 이하 같음)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되나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경우는 포함, 이하 같음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1)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자에 한함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4조(주택취득 등 제한) 채무자 및 그 배우자는 본 대출기간 동안 2주택 이상을

취득^{주2)}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습니다.

주2) 소유권 취득,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, 이하 같음

제 5조(주택보유수 확인) ① 저축은행은 최초 대출실행 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(이하 “HOMS”라 함)을 통해 저축은행에 등록된 채무자 및 그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를 확인합니다.

② 대출실행 후 관련 법령 등의 준수 및 정부정책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를 HOMS를 통해 확인합니다.

제 6조(의무위반이 아닌 경우) 제 5조에 따라 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,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 단, 2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
1. 채무자 및 그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과 관련된 자료(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내역 등)를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경우

가. 취득한 주택이 규제대상 아파트인 경우로서 '20.7.9.까지 해당 아파트(분양권, 입주권 등 포함)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

나. 취득한 규제대상 아파트 소재지역이 현재시점 이후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우로서, 그 신규지정일 전까지 아파트(분양권, 입주권 등 포함)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

제 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)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제 4조를 위반하여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

제 8조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유예) 제7조에도 불구하고, 아래의 사유의 경우 제 7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본 대출 변제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.

1. 무주택 가구가 본 대출기간 동안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제 5조에 따라

확인되는 경우 : 본 대출의 만기일자와 취득한 규제대상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

제 9조(여신거래 약정위반)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전액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3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4)}이 제한됩니다. 단, 제 8조에 따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약정위반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.

주3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4)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<별표5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제 4조를 위반하여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